

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의2] <개정 2026. 7. 7.>

##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(제9조의7제1항 관련)

### 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다.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(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대체수단을 이용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### 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   |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차          | 2차          | 3차 이상       |
|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<br>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3조의4제1항제1호 | 지정취소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나.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<br>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않<br>은 경우                 |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 | 지정취소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다.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<br>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<br>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|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 | 업무정지<br>3개월 | 지정취소        |             |
| 라.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<br>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 | 경고          | 업무정지<br>3개월 | 업무정지<br>6개월 |